

사 천 시 공 보

제870호

사천시 고시 제2024-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 1. 11.

사 천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승인번호 (연월일)	목 적	위 치	면적(㎡)	승인기간	피 승인자		비고
					주 소	성 명	
2023-29 (2023.12.28.)	사천일반산업단지 물양장 전면의 수심확보를 위한 준설 (오탁방지막 설치 포함)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748번지선 전면	14,980 (직접)	2024. 1. 1. ~ 2024. 12. 31.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투자유치산업과장)	

사 천 시 공 보

제870호

사천시 고시 제2024-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24. 1. 11.

사 천 시 장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사항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점용·사용 허가사항		공사내용 (인공구조물 설치)	공사 예정기간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번호 (연월일)
주소	성명	위치	면적(㎡)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장 (해양수산과장)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286-8번지선	2,912 (직접)	- 갯섬항 방파제 설치 (L=90m)	2024. 1. ~ 2024. 12. 31.	2024-1 (2024.1.9.)

사 천 시 공 보

제870호

사천시 공고 제2024-25호

「사천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간 간격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간 간격 완화(안 제35조제1항제2호)

1) 대 상: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높이 10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2) 건축간격: 건축물의 각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 “1.5미터” 이상

사 천 시 공 보

제87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건축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202

FAX : 831-6034)

사 천 시 공 보

제87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건축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87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2미터”를 “1.5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 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사 천 시 공 보

제870호

사천시 공고 제2024-28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기존 축사의 축종변경시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축종으로의 변경을 일부 허용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사 천 시 공 보

제870호

2. 주요내용

가. 주거밀집지역의 거리산정시 부지경계로 명확히 하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서 개축하는 경우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함

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기존 시설의 축종 변경시 제한거리가 같거나 완화(축소)되는 축종으로의 변경을 다음과 같이 허용함

- 돼지, 개, 가금류(닭, 오리 등) → 젓소, 소
- 젓소 → 소
- 소, 양, 염소, 말 등 제한거리가 같은 축종은 상호변경 허용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보호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779, FAX : 831- 6025)

사 천 시 공 보

제87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7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를 “인가 간의 거리가 부지경계에서”로 한다.

제3조제3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이내에서 개축하는 경우
2. 일부제한구역에서 1회에 한하여 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축종 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같거나 완화된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돼지·개·가금류 간 축종 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3. 삭 제</p> <p>4. “주거 밀집지역”이란 <u>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50m이내로서 5호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u></p> <p>5. 6. (생 략)</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② (생 략)</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 6. (생 략)</p> <p>7. <u>일부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축종의 변경 없이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u></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4. ----- <u>인가 간의 거리가 부지경계에서 -----</u> -----.</p> <p>5. 6. (현행과 같음)</p>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④ <u>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u></p>

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1. 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이내에서 개축하는 경우

2. 일부제한구역에서 1회에 한하여 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축종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거리가 같거나 완화된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돼지·개·가금류 간 축종변경은 해당하지 아니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신 설>

④ (생 략)

규 제 영 향 분 석 서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가축사육의 제한 등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인적사항	○ 부서명 : 사천시 문화관광국 환경보호과 ○ 작성자 : 환경보호과장 직급 지방환경사무관 성명 권순옥 생활환경팀장 직급 지방환경주사 성명 박주동									
4. 근거법령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 련 규제수	1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 규제집단 : 축산업 농가(가축사업 허가 및 등록 농가) ○ 이해 관계자 : 축사 인근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									
6. 규제 존속기한	○ 존속기한 설정 시 규제의 계속성에 대한 의문으로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생활·환경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준수가 필요함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종전규제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금지, 증축 시 악취저감대책 수립 의무화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7. 일부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축종의 변경 없이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div> ○ 강화규제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제한 규정을 신설함									

	<p>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 6. 생략</p> <p>7. 삭제</p> <p>④ <u>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u></p> <p>1. 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면적 이내에서 개축하는 경우</p> <p>2. 일부제한구역에서 1회에 한하여 기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p>
--	--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규제신설의 배경 및 원인

-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 등으로부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현행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되고 있으나,
- 당초 조례에는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 가축사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증축의 경우만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으나, 신축이나 개축에 대하여는 명문화 하지 않음으로써 축사의 건축허가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1-2. 규제의 강화 필요성

- 기존 노후 축사 매입 및 이를 개축·증축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신축의 경우 당초부터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으며, 개축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증축의 경우 일부 허용규정이 있으므로 개축의 경우 당연히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조례에 이런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인·허가시 혼란을 일으키고 있음
- 이에 금번 개정 시 개축을 허용하되 증축의 경우와 같이 악취저감대책을 수립토록 하여 인근 주민들의 축사 악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기존 규제의 대체 여부
 -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임
- 비규제 방법으로 목적 달성방법
 -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계도, 홍보 등의 비규제 방법으로는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경제·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배출시설의 개축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축사현대화와 악취로부터 민원을 예방함으로써 행정편익 발생
 - 규제신설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행정비용은 없음
- 시장경쟁(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업활동 저해요소는 없음

□ 중소기업 규제영향 분석

-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 차등화 대상 아님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보다 편익이 크며 규제가 과도하지 않으며 적절한 수준임.

3-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사회적, 기술적 여건상 이해관계자들이 준수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제이며 행정적으로 집행가능한 내용임

3-4.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 해당 없음

관 련 법 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실태조사를 한 지역과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중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그 지정·고시를 요청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3. 24.]

사 천 시 공 보

제870호

사천시 공고 제2024-59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입축하금을 지원하여 생활인구의 전입을 유도하고, 전입한 시민이 우리 시에 정착한 것을 축하함으로써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전입축하금 지원 신설(안 제2조, 제5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사 천 시 공 보

제870호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196,
FAX : 831- 6011)

사 천 시 공 보

제870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70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전입축하금”이란 전입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전입축하금 지원: 별지 제13호서식

제9조 중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2의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란 다음에 전입축하금 지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입축하금 지원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20만원 지원(생애 1회) - 신청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사천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¹⁾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받는 기관: 사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대상자 자격 여부 확인 및 중복지원 관리
-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
-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전입축하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입축하금 통합 수령 동의²⁾

- 본인의 전입축하금을 앞쪽의 통합신청인이 통합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

통합신청인 과의관계	성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¹⁾	통합 신청인에게 통합지원 동의 ²⁾	자필서명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	읍면동 확인사항(✓)	
					타시군구 2년 거주	권한있는자 서명 확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사천시장 귀하

작성방법

- ◎ 동의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본인의 성명을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 ◎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고, 기타 의사무능력자는 이에 준한 자가 서명할 수 있습니다.
- ◎ 성명과 서명은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서명은 본인(또는 법정대리인)이 정자로 작성해야 합니다.
- ◎ 읍·면·동 확인사항(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대상자 모두 타 시·군·구 2년 이상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서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친권자, 법정대리인 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8.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전입축하금”이란 전입을 축하하고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u></p>
<p>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생략)</p> <p>② 제4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출산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8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고, 산후조리비는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전입일이 18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3.4.27.></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 ----- ----- -----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전입축하금 지원: 별지 제13호서식</u></p>
<p>③·④ (생략)</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대장 비치) 인구증가시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읍·면·동장은 <u>별지 제4 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u> 을, 시장은 <u>별지 제6호서식, 별 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 식</u>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제9조(대장 비치) ----- ----- ----- ----- <u>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u>----- ----- <u>별 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u>----- -----.</p>
---	---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2] <개정 2023. 9. 21.></p> <p style="text-align: center;">전입시책 지원(제4조제2호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원내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 원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우대인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사천 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무료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쓰레기 봉투지원</td> <td>○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학생 기숙사비 지원</td> <td>○ 기숙사비 중 학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재학생 한정)</td> </tr> </tbody> </table>	지원내용	지 원 기 준	우대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사천 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무료 	쓰레기 봉투지원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 중 학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재학생 한정)	<p>[별표2] <개정 . . .></p> <p style="text-align: center;">전입시책 지원(제4조제2호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지원내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 원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우대인증</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사천 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무료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쓰레기 봉투지원</td> <td>○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대학생 기숙사비 지원</td> <td>○ 기숙사비 중 학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재학생 한정)</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전입축하금 지원</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20만원 지원(생애 1회) - 신청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사천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td> </tr> </tbody> </table>	지원내용	지 원 기 준	우대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사천 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무료 	쓰레기 봉투지원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 중 학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재학생 한정)	전입축하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20만원 지원(생애 1회) - 신청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사천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내용	지 원 기 준																		
우대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사천 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무료 																		
쓰레기 봉투지원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 중 학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재학생 한정)																		
지원내용	지 원 기 준																		
우대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유효기간 5년, 분실·훼손시 재발급 가능) - 사천 실내수영장 및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이용료 : 일반인 이용자의 수영장 개인 이용료 또는 월 이용료 50퍼센트 할인 -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에 한하여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할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 50퍼센트 할인 - 항공우주박물관 관람료 : 무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람료 : 무료 																		
쓰레기 봉투지원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1회에 한하여 400리터 지원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 중 학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재학생 한정)																		
전입축하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입하는 사람 한 명당 20만원 지원(생애 1회) - 신청기간: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대상: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사천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1) 전입축하금 지원을 위한 예산액 반영
- 2) 조례안 제3조(지원대상) 및 제5조(신청 및 절차)

나. 비용추계 결과

1) 추계의 전제

- 전입축하금 지원 비용

※ 2023년도 지원대상 전입자수 추계: 약 5,000명

· 2024년도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지급함으로 지급대상을 2,500명으로 추계

2)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세출	일반회계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소 계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세입	지방세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소 계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다. 부대의견: 없음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임 정 의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 계
재원조달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지 방 세	5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50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기 획 예 산 담 당 관 임 정 의

관 계 법 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장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